

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구교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2년 11월 일
제출자 : 구교강, 도희재, 김경호, 김종식, 여노연, 장익봉, 이화숙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및 제30조와 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,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과 성주군 조직개편(안)에 따른 의정팀 신설과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당연직 간사 명칭 변경
(안 제6조 2항)
- “의사담당” → “의정팀장”

3. 규칙안 : 붙임

- 4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성주군 의회규칙 제 호

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2항 중 “의사담당”을 “의정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회의) ① (생 략)</p> <p>②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 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과 <u>의사담당</u>이 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의정팀장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